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급여 실시 근거 마련 〉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0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에너지급여 실시 근거 마련	3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0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2. 28.
- (3) 회 부 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비율은 79%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약 20%는 에너지이용권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이용권 수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해당 가구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이 속한 세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재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현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이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급여법안」(의안번호 제8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에너지급여 실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u>제11조</u> 및 <u>제12조의3</u> 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u>제11조</u> , <u>제12조의3</u> 및 <u>제14조의3</u> ----- ----- ----- -----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u>제1항제1호</u> 부터 <u>제7호까지</u> 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에너지급여</u> ② ----- ----- <u>제1항제1호</u> <u>부터 제8호까지</u> ----- ----- -----.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u>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u>제14조</u>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u><신 설></u>	③ ----- ----- ----- ----- ----- <u>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u>----- -----. ----- ----- ----- -----.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 ----- ----- <u>제14조, 제14조의3</u>----- ----- ----- ----- ----- ----- ----- ----- -----. <u>제14조의3(에너지급여) ① 에너지</u> <u>급여는 수급자가 냉방 및 난방</u> <u>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u> <u>을 수 있도록 금전 또는 물품</u>
--	---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

<u>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u>)에게 보내야 한다. ③ (생 략)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u>제14조</u>,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생 략)	<u>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에너지급여</u>-----.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보장비용)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14조, 제14조의3</u>----- ----- ----- ----- 4.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그 소비량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¹⁾

특히, 저소득층은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여 건강과 삶의 질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²⁾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바우처로 지원³⁾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⁴⁾를 운영하고 있음.

1) 조성은, “에너지 소비의 중요성과 기초에너지 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p.29-41

2) 부산대학교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이환희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중년층(19~64세)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비수급권자에 비해 여름철과 겨울철의 극한 고온 및 극한 저온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약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3.31.자 부산대학교 보도자료, “의료급여 받는 청년·중년층, 여름·겨울철 응급실 30% 더 찾는다”)

3)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삭제<2023.4.18.>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수혜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20%는 에너지이용권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부가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 급여를 추가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평균 14,0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평균 7,040원
(2019년 한국가스공사 자료 참고)

□ 「에너지법」 제4조제5항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너지급여를 통해 에너지이용권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연료비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만큼이므로, 지급된 생계급여에 포함된 연료비의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적정한 에너지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수준의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에너지급여를 신설하는 경우,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의 최저 광열비 >

- (계측기준) 「에너지총조사보고서(2022)」의 도시가스, 전기 사용량에 지역별 도시가스, 전기요금 단가의 인구 가중평균값 적용
- (계측결과) 4인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비(月/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전기요금	40,443	40,132	38,701	39,790
난방취사	53,721	54,274	55,767	57,259
계	94,164	94,406	94,468	97,049

자료: 보건복지부

5)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다만, 에너지급여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우처 형식인 에너지이용권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에너지급여는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결국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해당 금전이 냉·난방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이용권의 경우 일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안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급여법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07)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사업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급여와의 중복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가져올 수 있어 수용 곤란함.

□ (기초지자체*) '에너지급여'를 별도의 법률로 따로 규정할 경우 사회보장 체계가 이원화되고, 사업 간 대상자 중복 선정 등 일선 사업주체 간의 혼선 야기 우려되어 비효율적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행인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을 시 전달체계 과부하 우려됨.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청,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예산시, 경기도 14개 시·군(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파주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안성시, 여주시, 구리시, 연천군, 양평군)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현행법상 생계급여에 개정안의 에너지 관련 지원이 기 포함되어 있고, 세대 한정 지원이 문제라면 기존 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에너지법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 접수처인 읍면동에서 업무다툼(복지부서-산업부서)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달체계/운영인력/추진예산 등의 대책이 전무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07) 주요내용
-------------	--

1.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에너지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 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품, 보장기관, 소득인정액을 정의함(안 제2조).
3.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4. 에너지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안 제5조).
5. 수급권의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및 지역별 기준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7조).
6.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소득·재산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에너지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7.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하고,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권한을 범정부복지통합망을 운영·관리하는 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